

서울중앙지방법원 2021. 8. 13 선고 2020나81207 판결 [보증금 청구의 소]

전 문

원고, 항소인 주식회사 A

소송대리인 법무법인(유한) 한결

담당변호사 권영균

피고, 피항소인 전남신용보증재단

소송대리인 변호사 서희원

변 론 종 결 2021. 6. 11.

판 결 선 고 2021. 8. 13.

제1 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. 10. 27. 선고 2019가단5602 판결

주 문

1.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.
2.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.

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

제1심판결을 취소한다. 피고는 원고에게 69,032,176원 및 그중 68,000,000원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분 송달 다음날부터 2019. 5. 31.까지는 연 15%의,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%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(원고는 주위적으로 보증금을, 예비적으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금을 구하고 있다).

이 유

1. 제1심판결의 인용

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, 당심 변론의 결과를 보태어 보더라도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.

이에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아래에서 고쳐 쓰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.

◎ 제1심 판결문 제6면 제1행의 “이 사건 특약사항”을 “이 사건 신용보증서의 특약사항(이하 ‘이 사건 특약사항’이라고 한다)”으로 고쳐 쓴다.

◎ 제1심 판결문 제10면 제7행의 “주장한다. 그러나”를 “주장한다. 그러나 을 제1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전라남도가 2017. 4. 6. 원고의 창업자금 취합 담당자에게 B를 포함하여 3개의 업체가 기재된 추천기업 명단을 통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, 가사 원고가 이 사건 추천결정통보서를 받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B에게 이 사건 특약사항에 부합하게 대출을 실행하지 못한 귀책사유는 원고에게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과”로 고쳐 쓴다.

2. 결론

그렇다면, 원고의 이 사건 주위적,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.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,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.

재판장 판사 신재환, 판사 김정민, 판사 윤웅기